

문학 텍스트의 수사적 분석*

- 착상을 중심으로 -

양태종(동아대)

1. 착상 중심 분석의 필요성

수사학을 이용하여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¹⁾ 이는 각종 무늬들 *Figuren*을 이용하는 신비평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 새롭지 않은 일을 새롭게 논의하려는 까닭은, 지금까지의 수사적 분석이 수사학의 다섯 분야들 중 하나이며 달리 문체라고도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다른 분야의 분석 가능성을 모색하려 하기 때문이다.

수사학은 설득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착상, 찾아낸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배열, 배열된 것에 언어의 웃을 입히는 표현, 표현된 것을 기억하는 암기, 암기된 것을 목소리와 몸짓 그리고 표정에 맞춰 청중 앞에 내보이는 발표의 다섯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아직까지도 수사 교본들의 지면을 대폭 할애받고 있는 분야는 앞의 셋이고, 나머지 두 분야는 실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여 이론적인 설명에서는 주변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자세히 다뤄지는 분야들 중에서는 착상과 표현이 쌍벽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한 분야인 배열은 연설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설의 각 부분에 어떤 생각을 담아내어야 하는 것은 착상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어, 좁은 의미의 배열의 영역에는 순수하게 순서에 관한 것만 남게 된다. 즉, 자연스러운 순서를 따르느냐 아니면 특정 부분의 순서를

* 이 논문은 2000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공모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수사학이 문학적 텍스트뿐만 아니라 비문학적 텍스트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한 마디로 텍스트 분석도구로 굳건히 자리잡은 데에는 플레이트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정의인 “훌륭한 말재주”에서 수사학의 일차적 기능이 “재주의 규칙에 따라 텍스트를 만드는 것”에 있음을 알아차리고서는, 그 역의 과정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즉, 어떤 텍스트가 수사규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그 텍스트는 수사규칙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그는 수사학을 “훌륭한 분석 재주”로 정의하고 있다(H.F.Plett 1991: 3 이하 및 2002: 19 이하 참고).

인위적으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만 남는다. 이와 같은 배열 영역의 축소는 착상 영역의 상대적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표현 중심의 분석에 뒤이을 분석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진다.

착상 중심의 분석이 이뤄진다 해서 수사적 분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배열에 남아있는 부분은 물론 암기와 발표 분야를 고려한 분석도 이뤄져야 수사적 분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시도는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준비 작업인 것이다. 이 시도에서는 고대 수사교본에 나오는 착상의 범주들이 주로 분석 범주로 이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옛날의 수사학으로 가득하기”(R.BARTHES 1998: 17)도 하거니와, 2000여 년전의 고대 수사학이 여전히 현대 수사학의 골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 분석 범주

고대에서는 착상의 분야가 결코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다. 수사학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해주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어느 대상에서나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라며(Aristoteles 1980: I,2,1), 착상을 중시하는 수사학 정의를 내놓은 바 있다. 또 희랍 수사학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수사학의 로마 시대를 열었던 키케로도 자신의 처녀작을 착상에 바쳤다.²⁾ 이렇듯 중시되었던 착상에서는 수사학의 효과목표인 “설득”³⁾에 기여할 수 있는 범주들이 설정되고, 텍스트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범주의 규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범주들이란 주어진 상황의 문제점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 문제에 대

2) 키케로의 처녀작은 『이른바 착상에 관하여라 불리는 수사서 2권』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통칭은 『착상에 관하여』이다.

3) 여기서의 ‘설득’은 이성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에는 보고하는 알리기, 논증하는 따지기, 윤리적인 가르치기가 있고, 후자에는 물품 판매처럼 목적이 텍스트 밖에 있는 얻어내기와 목적이 텍스트 안에 있는 웃기기, 그리고 격한 감정을 폭발시키는 울리기가 있다. H.F.Plett(2002: 21 이하)과 양태종(2002: 27 이하) 참고.

하여 입장을 표명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물론 중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 등이다. 여기서 주어진 상황이란 학교 수사학이 모범으로 삼는 법정연설의 상황을 말한다. 거기서 원고와 피고는 특정 사건을 두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의 변화를 노리고서 편파적인 주장을 편다. 이때의 상황의 변화는 재판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사적인 용어를 이용하면 “설득”하기 위한 온갖 수단들이 동원된다. 우리의 분석 범주가 앞으로의 일 반적 텍스트 분석에서 응용되어도 부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법정연설의 상황을 수사적 상황이라 하자.⁴⁾

수사적 상황이 전개되면, 각자는 어떤 처지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를 수사학은 권투경기에서 빌려온 개념을 이용하여, 어떤 자세에서 상대를 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빗대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처지론 Stasis-Lehre이다. 여기서는 따짐과 풀이의 두 영역이 다시 각각 네 가지로 하위분류되고 있다. 따짐은 짐작, 정의, 속성, 이전으로, 풀이는 뜻풀이, 겹침풀이, 맞섬풀이, 유추풀이로 나뉜다. 그 각각은 말하는 사람이 확신하는 자세를 나타낸다. 이때 이해당사자들 중 한 사람은 상대가 설정한 범주를 부정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세를 잡는다.⁵⁾

그런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문제가 된 말거리가 대변하기 쉬운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판단의 결과 대변성 등급에 따른 다섯 가지 말거리가 나온다. 이를 대변하기 쉬운 것부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맞장구 말거리, 이상한 말거리, 놀라운 말거리, 시시한 말거리, 뒤엉킨 말거리.⁶⁾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말거리가 어느 것인지 판단하고 나면,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즉, 자기 말거리에 들머리의 어떤 원칙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⁷⁾

4) 이를 라우스베르크(H.Lausberg 1979: 15)는 단순히 “상황”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의사소통의 특수한 경우로 보고 “수사적 의사소통”(B. Frank-Böhringer 1963: 9) 또는 수사학의 효과목표를 수식어로 한 “설득적 의사소통”(J. Kopperschmidt 1976: 99)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수사적”이란 수식어를 덧붙여 보았다. 이를 첨가함으로써 일 반적 상황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5)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89; 2002: 134-141) 참고.

6)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2002: 128 이하) 참고

7)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양태종 (1993b; 2002: 196 이하) 참고.

그 원칙이란 청중의 호감을 사거나 관심을 끌거나 이해를 돋는 것이다.⁸⁾ 들머리가 완성되고 나면, 일의 대강을 알리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증명의 전제가 되는 얼거리인데, 여기서는 간결성, 명확성, 신빙성의 세 원칙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⁹⁾ 증명의 전제가 제시된 다음은 증명이 뒤따라야 한다. 이 단계는 이야기의 핵심이라서 벼리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다.¹⁰⁾ 여기서는 수사적 삼단논법인 논증법 Enthymem과 수사적 귀납법인 예증법 Beispiel을 사용하여 이성적 확신을 심는 작업이 이루어진다.¹¹⁾ 이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내용을 논거로 삼는 작업, 즉, 이 유사논리적 형식에 들어갈 내용인 말터 Topos의 선택도 중요하다.¹²⁾ 이런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야기를 마무리짓게 된다. 이때에는 청중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요약의 방법이 쓰이기도 하고, 이야기의 끝이기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감정을 돋구는 방법이 쓰이기도 한다.¹³⁾

3. 분석의 실제

문학 텍스트 중에서 수사 범주를 이용한 분석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규범 수사학이 정한 바에 따라 만들어진 텍스트이다. 그 다음으로는 분석의 범주가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 텍스트일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학교 수사학이 법정연설을 모범으로 삼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법정연설이 들어있는 문학작품이야 말로 분석대상으로서는 제격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일란트 Ch.M. Wieland의 『압데라 사람들 이야기 Die Geschichte der Abderiten』에 나오는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 Der Prozeß um des Esels Schatten」을 분석 대상으로 골라 보았다.¹⁴⁾

8)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3a; 2002: 190-202) 참고.

9)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5; 2002: 210-217) 참고.

10) 이 용어를 시안적으로 선보이는 까닭은 이야기의 다른 부분들의 명칭이 모두 ‘-리’로 끝나기에,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밝히기”를 버리고 명칭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11)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6a; 2002: 218-237) 참고.

12)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6b; 2002: 182-189) 참고.

13)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7; 2002: 238-241) 참고.

3.1. 수사적 상황

이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수사적 상황은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된 발단은 이러하다. 치과의사 슈트루치온('갑'이라 하자)이 당나귀몰이꾼 안트락스('을'이라 하자)의 당나귀를 빌려 게라니아로 가는 도중에,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서 당나귀 그림자에 앉아 숨을 돌리려 했다가, 을이 그림자 값을 요구하자 이에 발끈하여 터무니없는 요구하며 일축한다. 고집스러운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둘은 암데라로 되돌아가서 누가 옳은지를 따져보자는 데 합의하여 시재판관에게로 달려간다(상황 1). 이해당사자들이 상황제어자인 재판관의 판결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두 변호사가 갑과 을을 서로 부추기는 바람에 소유권을 전담하는 20인 위원회에 갑이 항소한다(상황 2). 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 을쪽은 최고법정인 400인 입법회의에 항소한다(상황 3).

		상황 1	상황 2	상황 3
이해당사자	치과의사(갑)	갑, 갑의 변호사	갑, 갑의 변호사	
	당나귀몰이꾼(을)	을, 을의 변호사	을, 을의 변호사, 수석 사제	
상황 변화	상황 제어자	시 단독 재판관	20인 소유권 전담 위원회	400인 입법의회
	이해당사자	갑: 그림자값 지불 거절	갑의 손해 배상	갑의 손해와 재판비용 배상, 각급 법원과 나라에도 보상
	상황 제어자	을: 1 드라크마 요구	을의 손해 배상	을의 손실 배상, 갑의 변호사 처벌
상황 제어자	갑은 을에게 반 드라크마를 지불하라	을은 갑에게 갑의 손실을 배상하라	시는 양측의 손해를 배상하고, 당나귀 동상을 전립하라	

<표 1>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에 나타난 수사적 상황

14) 앞으로의 분석에서 인용 뒤의 번호는 이 텍스트의 면을 가리킬 것이다.

라우스베르크(H.Lausberg 1979: 15 이하)가 설정한 범주들을 이용하여 각 수사적 상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의 각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의 상황변화는 당사자의 의도이자 목적을 나타낸다. 당사자들의 목적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서로 간의 갈등의 풀은 깊어간다. 1 드라크마의 요구가 상황이 전개될수록 더 비싼 배상요구로, 심지어 국가에 대한 배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또 ‘시시한 말거리’가 어떻게 해서 중대 사안으로 둔갑하게 되었는지도 알려주고 있다. 한편, 상황제어자의 상황변화는 이해당사자가 말로 그에게 영향을 끼쳐 간접적으로 목표를 구현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합의이다. 그것이 완전한 의미의 합의가 아니라는 것은 항소로 이어지는 행위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입법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므로, 비록 그것이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억지로 삭혀야만 되는 강압적 합의인 것이다.

위의 상황들 중에서 우리의 관심은 <상황 3>에 쏠려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와는 달리 두 변호사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기 때문이다. 즉, 언어를 이용하여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구현하려 하는지, 상황제어자를 설득하려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두 변호사의 설득 노력을 분석할 것이다.

3.2. 처지론

위의 수사적 상황의 출발점은 하나같이 당나귀몰이꾼의 당나귀 그림자 값 요구이다. 이 요구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면, 두 변호사가 이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 즉, 처지론의 입장에서 보면 짐작 Vermutung의 문제 가 성립된 것이다. 만약 짐작의 단계에서 행위의 사실 여부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더 이상 말다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말다툼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 문제가 최고법원에까지 오게 된 것을 보면, 이해당사자들은 짐작의 단계에서 서로 확신한 행위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음이 틀림없다. 또 다시 처지론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과의사의 변호인은 당나귀몰이꾼의 요구행위를, “자기가 빌려준 당나귀 이외에

자기가 빌려주지 않은 당나귀 그림자도 양도된 데 대한 조금의 감사 표시를 요구 했을 뿐"(293)이라는 주장을 소유권 주장 행위로 받아들인다. 그는 이 행위를 "반쯤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나무 그늘에 앉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견주어 윤리적인 측면에서 몰아붙이는 한편, 소유권 주장 자체의 문제점을 들어 그의 주장의 부당함을 밝힌다. 이 부당성 증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그림자의 정의를 들어 그가 그림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설령 그림자가 당나귀의 부속물이라 해도 치과의사가 당나귀를 빌렸으니 그림자도 빌린 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그 요구행위의 부당성을 윤리적, 법적인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따짐 영역의 속성 Qualität의 문제이다.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수긍하여, 소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인정해버린다. 그리고서는 자기 의뢰인의 "뻔뻔하고 어리숙한 태도"가 그의 출생과 신분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람의 말터를 이용하여 밝힌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그의 어리숙한 행위의 본질은 소유권 주장에 있지 않고 농담을 건넨 데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쓰이고 있다. 즉,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요구 행위를 농담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따짐 영역의 정의 Definition의 문제인 것이다.

3.3. 대변성 등급

치과의사 쪽은 이미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그의 변호사는 법률적 판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다시금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상황제어자이자 판단의 주체인 400인 입법회의 의원들의 공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다시 연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앞에는 대변하기 가장 쉬운 맞장구 말거리가 놓인 셈이다.

이와는 반대로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2심의 패소판결을 뒤엎는 판결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자기 편 군중들도 상대 변호사의 연설을 듣고 나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즉, 청중들은 상대의 연설에 공감해버린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앞선 연사의 논조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다. 즉, 그의 앞에는 대변하기 까다로운 놀라운 말거리가 놓인 셈이다.

3.4. 이야기의 짜임새

3.4.1. 들머리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들머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종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나는 공화국 헌법의 우수성이요, 다른 하나는 판결에 대한 기대감, 나머지 하나는 당나귀몰이꾼의 뻔뻔스러운 행동이다. 헌법의 우수성은 “첫 눈에 2 드라크마나 3 드라크마쯤 나가는 소송, 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여 법도 그 소유될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할 때 까맣게 잊고 있던 대상에 대한 소송”이 “국가 전체의 사안”이 될 수 있는 헌법 자체에서도 나오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가장 사소한 주장이나 요구”조차도 최고 법정이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는 공화국의 비교우위에서도 나온다. 이 비교 우위도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헌법의 우수성을 치켜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헌법은 입법의회에서 만들어지고, 그 입법의회의 의원들이 바로 이 번 소송의 배심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칭찬은 배심원 칭찬으로 이어진다. 수사적 상황에서 상황 제어자를 칭찬하는 것은 그의 호감을 사는 요령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들머리의 호감 사기 원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칭찬의 내용에는 말거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소송 대상의 가치와 상대방 의뢰인의 신분을 통하여 이번 소송이 시시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대변성 등급으로 보아 시시한 말거리임을 밝히고 있다. 시시한 말거리는 청중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변할 때에는 관심을 끄는 들머리의 원칙이 쓰여야 한다. 작가인 비일란트는 이 시시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 지면들은 소시민적 시각에서 어떻게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짓누르려 하는지, 이해관계에 따라 소집단들이 어떻게 합종연횡의 술수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급기야 어떻게 해서 온 시민이 이른바 “당나귀 당”과 “그림자 당”으로 나뉘어 서로 상대를 혈뜯게 되었는지로 채워져 있다. 이런 과정은 시시한 사건을 끄는 사건으로 발전시키는 중

요한 요소이며, 소설의 구성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연설에서는 이 과정의 결과만 언급되고 있다. 즉,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시시한 말거리가 “누구나의 일 이자 국가 전체의 사안”으로 비화된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시시한 말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시시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임을 드러내는 것은 모두의 관심을 끄는 것이 된다. 바로 그것은 교본이 지적하는 관심 끌기 원칙의 요령인 것이다.

치과의사의 변호사가 들머리에서 다룬 또 하나의 것은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 기대감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편파적이다.

“칭송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당국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확고부동하게, 아무 것도 지나쳐버리지 않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공평성의 저울을 다루었는지에 대하여, [...] 이 소송이 어떤 영광스러운 증언을 먼 훗날의 후세에게 할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291)

이 대목은 당국의 청찬, 공평한 결정과 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을 칭찬하는 것은 당국의 호감을 사는 것과 같다. 공평한 결정과 그 효과는 말하는 사람의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의 공평한 결정은 이해당사자라면 누구라도 바라는 것이다. 이를 들머리에 쓰게 되면 그 들머리는 “공통된 들머리”가 되고 마는데, 이것은 들머리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의 하나가 되고 만다(양태종 2002: 202 참고). 하지만 치과의사는 그 결정의 효과를 “영광스러운 증언”과 연결시킴으로써 들머리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다. 왜냐하면 증언의 영광은 치과의사의 변호인 또는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의 증언이 나왔을 때 얻어지는 것 이기 때문이다. 상황 제어자는 누구라도 자신의 결정이 후대에도 길이 남게 될 것을 바란다.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바로 그의 공명심을 자극하여 호감을 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 변호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영광스럽지 못한 증언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 암시를 통하여 변호사는 상황 제어자의 명예욕과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그를 은근슬쩍 위협하고 있다. 이것 역시 청중으로부터 호감을 사는 요령 중의 하나이다.

치과의사의 변호사가 들머리에서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당나귀몰이꾼의 뻔뻔스러운 행동이다. 그는 당나귀몰이꾼의 출생과 교육 및 생활의 말터, 한 마디로 사람의 말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의 “따뜻한 마음씨”와는 대조되는 그의 품성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에 호의를 베풀 양으로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눌 준비가 되어있던 암데라 시민들이, 어쩌다 서로에게 당나귀 그림자마저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불친절하고, 한마디로 그렇게 비인간적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 그렇게 비열하고 야만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민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우리 도시에 거주를 허락받고, 애손 신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며, 하층민의 가장 두터운 밑바닥 출신이자, 출생과 교육과 생활방식에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한 마디로 한 당나귀 물이꾼입니다. [...] 감히 말씀드리건대, 암데라 시민이라면 아무도 그런 야비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291 이하)

여기서 변호사는 “따뜻한 마음”과 “비인간적” 행동을 대립시켜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바른 선택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동시에 그는 암데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바른 쪽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추정을 하면서 청중을 칭찬하고도 있다. 칭찬을 받는 쪽에서는 그 칭찬의 이유에 반대되는 “야비한 짓”을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일 리 없다. 더욱이 그 사람이 개선의 여지가 없고, 신분이 천한 당나귀몰이꾼임에 라. 이 논리 전개가 노리는 것은 청중이 그에게 심한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제3자의 눈에 나의 상대에게 분노가 쏠리면, 나에게는 그 분노의 도가 떨어지거나 동정심이 가는 법이다. 위 변호사가 노리는 바도 결국은 이것이다. 당나귀몰이꾼에게 분노가 일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치과의사에게는 호감이 가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변호사는 상대에 대한 분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치과의사에게 호감이 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앞의 변호사와 입장이 다르다. 그에게는 맞장구 말거리가 아니라 놀라운 말거리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이미 상대방에게 공감한 청중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려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단 상대방

의 주장을 받아들이고서, 상대의 말꼬리를 잡는다.

“저는 제 상대에게, 그가 자신의 응변술로 끌어냈다고 추정하는 장점을 기꺼이 수긍하겠습니다. 부당한 짓을 한 사람도, 형용법과 미사여구, 전투적 행위 그리고 학교수사학의 눈속임으로 아이들과 어수룩한 사람의 눈에 먼지를 끼게 만들 권리는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런다고 눈이 멀지 않습니다.”(299)

상대방에 대한 긍정은 청중의 마음을 열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다. 그렇지 않고 곧 바로 상대를 비방하게 되면, 청중은 스스로 확신한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발을 나타내고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 문은 오직 자신과 같은 입장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따라서 청중의 확신을 뒤흔들어 놓으려는 사람은 일단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하여 청중과 같은 확신의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나귀들이꾼의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장점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여, 청중과 같은 편인 척 하고 있다. 문이 열리자 마자 곧바로 확신을 뒤흔드는 것은 어렵다. 은근슬쩍 상대의 확신에 금이 가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상대변호사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그를 “부당한 짓을 한 사람”으로, 그의 주장 행위를 “형용법과 미사여구, 전투적 행위” 등을 이용한 눈속임으로 꼬집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상대를 직접 거명하지 않고 일반화시켜 표현한 것은, 상대에 대한 청중의 신뢰를 직접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훔집을 내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청중에게 슬며시 다가가, 영리한 사람이라며 치켜세운다: “영리한 사람은 그런다고 눈이 멀지 않습니다.” 즉, 그가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믿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더라면, 청중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여 마음의 문을 다시 닫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청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영리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한다면 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라는 의도성 발언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청중의 호감을 사는 방법의 하나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그는 상대방의 잘못을 다시금 지적한다: “저는 알랑거려서

재판관을 매수하려고도, 은밀한 위협으로 놀라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청중이 상대에게 보내는 신뢰성에 조금씩 흠집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서 그 변호사는 이제는 청중의 마음을 돌렸다 싶어 자신의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냈다가, 교정법 *Correctio*을 이용하여¹⁵⁾ 상대에게 쏠린 신뢰를 자신에게로 조금씩 끌어오고 있다: “저는 당나귀물이꾼인 안트락스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안트락스가 부당한 상대방보다는 덜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299) 즉, 그 변호사는 청중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나귀물이꾼의 행동을 덜 부당한 쪽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두 행동의 부당성 비교가 노리는 바는 두 가지이다. 자기 의뢰인에게 쏠린 의혹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는 그 하나요, 치과의사에 대한 분노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목적의 다른 요령일 뿐이다. 왜냐하면 의뢰인에게 씌어진 의혹을 벗겨내는 일이나, 분노의 강도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일은 다 자기 편이 호감을 사게 하려는 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나귀물이꾼의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의 신분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 의뢰인의 뒤를 봐주는 명망 높은 수석사제를 끌어들이고 있다: “저는 당나귀물이꾼 안트락스의 변호인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야손 신전과 고상하고 품격있는 아가튀르수스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선 것입니다”(300). 이 말은 자신을 은근슬쩍 뽐내는 한편, 야손 신전의 현재 위상으로 보아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칭찬은 자기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요령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의 들머리는 상대방 칭찬 - 상대방의 말꼬리 잡기 - 청중 칭찬 - 말꼬리 잡기 - 의혹 벗기기 - 호감사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비껴 들기 *Nebeneingang*”의 수법이다.¹⁶⁾ 이것은 치과의사의 변호사가 쓴 “바로 들기 *Haupteingang*”와는 달리, 청중의 마음속으로 스미어 들어가서 청중이 갖고

15) 교정법은 말해진 것을 다시 고쳐 말하는 표현법으로(여기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을 이용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 주제를 늘리거나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 보다 자세한 것은 H.F.Plett (2002: 140 이하)을 참고하라.

16)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3b; 2002: 197-202) 참고.

있는 확신을 흔들어놓는, 또 다른 유형의 들머리이다. 두 변호사는 놀랍게도 교본이 제시하는 대로의 요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당나귀물이꾼의 변호사는 자기 앞에 놀라운 말거리가 놓여 있어서 비껴들기를 쓰고 있고,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맞장구 말거리가 놓여 있어서 호감사기 원칙을 쓰고 있다.

3.4.2. 얼거리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그 의사가 당나귀 그림자에라도 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을 이른바 육하원칙을 이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 훌륭한 시민이자 치과의사인 슈트루치온이

언제: 태양이 작렬하는 가장 무더운 여름날

어디서: 암테라에서 게라니아로 가는 길의 벌판에서, 나무 한 그루 없는
횡량하고 혐오스러운 벌판에서

무엇을: 당나귀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어떻게: 당나귀를 멈춰 세워서

왜: 딱히 다른 수단도 없었고 침도 마르고 해서, 뼈가 조개지는 고통을 더 이상 배겨낼 수 없어서

육하원칙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말터의 일부이다.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이를 이용하여, 치과의사가 “빈약하고 처량한 휴식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육하원칙을 이용하거나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상황을 그리는 것은 청자나 독자로 하여금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한다. 수사적 용어를 빌면, 얼거리의 명확성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상황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청중의 본성이나 가치관에 일치시키면, 청중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즉, 자신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치과의사의 변호사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무더운 여름 날”, “이글거리는 햇볕”, “뼈가 조개지는 고통”, “침의

마름”, “일사병에 걸린 혼탁한 눈” 등은 그날의 더위와 치과의사의 고통을 그려내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그는 장소 묘사법 *Descriptio loci*를 통하여 허허벌판의 삭막한 분위기를 드러내면서, 어쩔 수 없이 “보잘 것 없지만 벌거였던” 휴식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치과의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은 암데라와 게라니아 사이의 지역을 잘 아시겠지요? 두 시간 동안을 계속 가도 바싹 마른 불모의 벌판에는 여행자가 숨을 돌리고, 정오의 햇볕을 피할 도피처를 제공할 나무그늘 이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293). 이처럼 청중이 상황을 받아들이게끔 이야기하는 것은 청중이 이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것이다. 즉,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얼거리의 또 다른 원칙인 신빙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나귀 그림자 값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일의 대강을 알리고 있다.

“안트락스는 치과의사에게 자기 당나귀를 한나절 빌려주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도록은 아니고, 그 의사를 외투가방과 함께 게라니아로 데려가 주기 위해섭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그곳은 여기서 8마일은 족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당나귀를 빌려줄 때 어느 누구도 그 그림자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치과의사가 벌판 한가운데에서 내려 자기보다 훨씬 더 더위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당나귀는 햇볕을 받고 서있게 하고 자신은 그 그림자에 앉으려고 했을 때, 이 신사와 당나귀 주인의 입장이 같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300)

그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했는지에 대한 요점들만 추려 말하고 있다. 즉, 필요한 부분들만 추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얼거리의 또 다른 원칙인 간결성에 더 주력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또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같은 말터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말터를 보자. 치과 의사의 변호사는 그때 그 장소가 치과의사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그러한 고통을 당나귀와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말터는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그려내기 위하여, 편파적 주장은 위하여 사용된다 하겠다.

3.4.3. 베리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윤리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상대방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려 한다. 행위의 윤리성 문제와 관련하여, 그 변호사는 상대방 의뢰인의 주장을 “딱하고 비열한 변명”으로 일축하고 있다. 즉, “당나귀 그림자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빌려준 당나귀 이외에 빌려주지 않은 당나귀 그림자도 양도된 데 대하여 조금의 감사 표시를 요구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유사성의 말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당나귀의 그림자를 거절할 수 있는, 감정이 라고는 없는 냉혹한 사람은 어떤 괴물이었겠습니까? [...] 반쯤 탈진한 사람에게 돈을 내지 않고는 자기 나무 그늘에 앉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목말라 죽어 가는 이방인에게 자신의 소유지에서 흐르는 물을 들이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293 이하)

즉, ‘고통받는 이웃’을 ‘탈진한 사람’과 ‘죽어 가는 이방인’에게 빗댐으로써 대상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당나귀 그림자’를 ‘나무 그늘’과 ‘흐르는 물’에 빗대어 기능상의 유사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사성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못하게 하는 사람”, “허용하지 않으려는 사람” 등의 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사람이 “괴물”的 범주에 든다는 것을 변호사는 소통법 Communicatio을 이용하여 밝히고, 이 어지는 문장들에서는 자문법 Aporie을 이용하여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되묻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이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태도를 취하는 척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자의 판단이나 지식이 슬며시 청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화자는 노리고 있다.

또한 위의 유사성 말터의 이용은 예증법의 보기이기도 하다. 예증법은 유추명제에 대한 동의를 통하여 증명할 명제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는 증명의 방법이다. 엄밀히 말하면, 소통법을 사용한 첫 번째 물음은 증명할 명제로서 마지막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괴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려다 보니 먼저

나오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증법 형식을 갖게 된다.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나무 그늘에 앉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괴물이죠? 죽어가는 이방인에게 자기 소유지의 흐르는 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괴물이죠? 그러니 고통받는 이웃에게 자기 당나귀의 그림자를 거절하는 사람은 괴물입니다.”

또한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이를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허구의 말터를 사용하고 있다. 즉, 꾸며댄 이야기나 이미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 우화 등을 끌어들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허구의 말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리키아 농부들이 라토나와 그 자식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아 개구리로 바뀌었던 일을 기억시키면서, 그런 거절 행위가 수치스러운 일임을 덧붙이고 있다.

“거절하는 인간성에 대한 신들의 분노를 나타내는 이 무시무시한 기념물이 공공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곳에서, 비슷한 범죄로 신들의 복수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수치스럽지도 않는가?”(294)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당나귀몰이꾼의 요구 행위의 윤리성을 문제삼고 나서, 이제 그 행위의 적법성 문제를 파고든다. 그는 그림자의 소유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방향에서 접근한다. 하나는 그림자의 원인을 밝히는 소유권이 없다는 쪽에서, 다른 하나는 소유권이 있다는 쪽에서 접근한다. 전자의 방향에서 제기한, 그림자 원인의 설명과 상대에 대한 반박 논리를 보자. (번호는 설명을 위해 달아 놓았다.)

“(1-1) 그림자란 정확히 말해서 실제의 것에 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로 만드는 것은 실재적이고 양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의 것, 즉, 그림자를 둘러싼 나머지 것들에 놓인 빛을 빼앗는 것입니다. (1-2) 이번 사건의 경우에 태양의 비스듬한 위치와 당나귀의 투명하지 못함이 당나귀가 드리우는 듯한 그림자의 진정하고 유일한 원인입니다. (1-3)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어느 다른 물체라도 자기 자리에서 던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의 형상은 여기서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2-1) 그러니까 저의 의뢰인은 정확히 말해서 어떤 당나귀의 그림자에 앉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물체의 그림자에 앉았던 것입니다. (2-2) 그리고 그 물체가 당나귀였고, 그 당나귀가 암데라에 있는 애손 신전의 안트락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라는 것은, 사건의 본질에 속하는 것도 아니요, 그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1-2)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

린 바와 같이, 당나귀라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여러 번 언급한 당나귀의 물체성과 불투명성이 당나귀가 드리우는 듯한 그림자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295)

이 반박의 논리 구조는 두 가지 논증법을 이용하고 있다: (1-1)-(1-2)- (2-1)과 (1-1)-(1-3)-(2-2). 여기서 (1-1)은 대전제와 그 증명이고, (1-2)와 (1-3)은 대전제 증명의 두 가지 예이다. (2-1)과 (2-2)는 결론이다.¹⁷⁾ 첫 번째 논증법만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대전제: 그림자는 실재의 것이 아니다.

소전제: (그가 앉은 곳은 당나귀의 그림자다)

결론: 그가 앉은 곳은 실재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래서 위의 글에서 “이번 사건에서”라고 줄여 말하고 있는 소전제는 생략되고 있다. 즉, 생략 삼단논법과 마찬가지의 논증형식이 쓰이고 있다. 이 소전제에 나오는 ‘당나귀 그림자’는 대전제에 나오는 ‘그림자’ 집합의 한 원소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역 과정인 “개별화”를 이용하면 그림자와 당나귀의 그림자의 관계가 입증된다. 또 실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대전제의 증명과 그 보기에서 드러나듯이, 물체의 것이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위 변호사는 논증법을 이용하여, 자기 의뢰인이 앉은 곳이 당나귀의 그림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당나귀물이꾼의 그림자 값 요구는 자기 것의 아닌 그림자에 대한 값을 요구한 것이 되고 만다. 이 행위의 부당함은 자명한 일이다.

두 번째 방향에서 보자. 그 변호사는 설령 당나귀물이꾼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의 반박논리도 논증법을 이용하고 있다.

“당나귀의 귀가 당나귀의 부속물이듯이, 당나귀 그림자도 그러하다고까지 인정해보겠습니다. [...] 슈트루치온은 당나귀를 빌렸으니, 결과적으로는 그 그림자도

17) 이때 전제의 증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안한 논증법의 확대형으로서 키케로식 논증법의 구성 요소이다(양태종 1996a, 2002: 221 이하 참고).

빌린 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임대차계약에서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제되는 물건을 그에 딸린 모든 것과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296)

이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제: 임대물을 빌리는 것은 그에 딸린 부속물도 빌리는 것이다.

소전제: 슈트루치온은 당나귀를 빌렸다.

결론: 슈트루치온은 당나귀의 부속물인 그림자도 빌렸다.

위의 두 반박논리를 받아들이면,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당나귀의 것이라 해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의 주장에 긍정을 하고, 당나귀몰이꾼의 출생과 교육 등 사람의 말터를 이용하여 행위의 속성 문제를 정의 문제, 즉 농담 행위로 방향을 바꾸어버렸다. 그는 이 말터를 이용하여 당나귀몰이꾼의 어리숙한 태도를 정당화하는 한편, 그의 숙명적 삶을 보여 청중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말터가 편파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치과의사의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당나귀몰이꾼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또 그 말터를 상대방의 의뢰인과 벗대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 당나귀몰이꾼은 신분이 그래서 세련된 농담을 하지 못하고 돈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음을 인정하면서, 변호사는 이렇게 반문한다: “그런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동물의 등급으로 분류해야 할까요?”(301) 그의 수사적 질문은 논증법 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내리려면, “명예를 사랑하고 공평한 남자”는 마땅히 어리숙한 사람의 농담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전제가 성립되지 못하면, 농담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내세우는 명예를 사랑하는 남자가 되고 만다.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이런 남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허구의 말터를 이용하여 그려내

고 있다.

“이보게나, 우리 당나귀 그림자 때문에 옥신각신 말자구. 자네한테 당나귀를 빌린 것은 그림자에 앉으려고가 아니라 계라니아로 타고 가려는 것이니, 내가 내 힘으로써 입은 약간의 시간적 손실을 보상하면 공평하겠지. 더구나 당나귀도 더 오래 열기를 받으며 서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말일세. 반 드라크마 여기 있네. 여기서 잠시 숨 좀 돌리세. 그리고 나서, 내 모든 개구리의 이름을 걸고 말하지만,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세!” 치과의사가 이런 소리높이로 말 했더라면, ... 당나귀 물이꾼은 반 드라크마를 받고,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301)

3.4.4. 마무리

치과의사의 변호사는 상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는다: “고귀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400 의원 여러분, 그런 방자한 사람이, 신들이 자신들의 논쟁을 결정하게 한데 대하여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그런 파렴치범이 법정에서 보호를 받았다는 말을 압데라 사람들이 하지 않게 하십시오!”(297) 그는 상대를 뉘우칠 줄 모르는 ‘방자한 사람’,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점충법을 써서, 당나귀물이꾼의 보상 범위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의 가정적 평화, 생업 그리고 피고와 그 보호인들이 명예와 평판이 수많은 방법으로 피해받고 공격받았으니, 피고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 자가 일심법원의 공평한 판결에 아무런 이유없이 이 최고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신성한 법원에 대해서도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너무나 가치없는 소송으로 방자하게 최고 법원을 괴롭혔으니 최고 법원에도 보상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런 사건으로 도시 전체와 압데라 공화국을 소란과 분란의 위험에 빠뜨렸으니, 도시전체와 공화국에도 보상해야 합니다.”(297) 이것은 당나귀물이꾼에 대한 분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수법이다. 왜냐하면 그가 한 일로 모든 사람, 즉 공화국 전체가 소란에 빠졌으니 그것은 두려운 일이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인 신성한 법원이 영향을 받았으니 그것은 버릇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동정과 분노를 적절하게 섞고 있다. 그는 자기 의뢰인의 무조건 잘했다는 식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상대보다 덜 부당하는 것을 입증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트락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댓가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는 안트락스를 “지배하는”, 곧 관리하는 수석사제가 “곤장 스물다섯 대”의 태형에 처하게 한 것을 지적하여, 안트락스에 대한 동정심을 일으키고 있다.

“당나귀 몰이꾼 안트락스의 어리석음이 받아야 할 댓가로 곤장 스물다섯 대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302)

한편,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는 이런 동정심 자극의 방법 이외에도 분노유발의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그의 분노는 이제까지 점잖게 치과의사라 부르다 갑자기 “이를 부려뜨리는 자 Zahnbrecher”로 부르는 것에서 보듯이 치과의사에게도 향하고 있고, 그의 변호사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를 부려뜨리는 자가 필리피데스의 공평한 화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전문 소송인이나 저의 소중한 동료인 치과의사의 변호사의 부추김 때문입니다. 그가 이번 일을 통하여 압대라 공동체에 기여한 업적에 대하여, 그의 두 귀를 자르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영원한 기념으로 당나귀의 귀를 대신 불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교훈적 본보기로 삼기에 잘하는 일이 아닐런지요.”(302)

4. 마무리

우리의 분석 대상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가장 사소한 요구”였던 당나귀 그림자 값 요구 행위가 “국가 전체의 사안”으로 불거지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엄청난 배상과 처벌을 요구하는 수사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상황의 변화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수사적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차상 영역에서 이뤄진 분석을 종합한 이 표는 수사적 상황에서 자기 편의 편파적 주장을 어떻게 상황제어자에게 설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말을 바꾸면, 작가는 치밀한 수사적 전략을 수립하여 있을 수 있는 수사적 상황의 전개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변호사	당나귀몰이꾼의 변호사
처지론		따짐의 속성 (요구는 부당했다)		따짐의 정의 (요구는 농담이었다)
대변성 등급		맞장구 말거리		놀라운 말거리
이야기 의 짜임새	틀	종류	바로들기	비껴들기
	머리	원칙	호감사기(상대 비난, 청중 칭찬)	호감사기(자기 과시, 상대 비난, 청중 칭찬)
	얼거리		명확성, 신빙성	간결성
	벼리		예증법, 논증법	논증법
	마무리		상대에 대한 분노	상대편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동정
말터	신분		상대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동정
	시간, 장소		치과의사의 고통	당나귀의 고통

<표 2> 착상을 이용한 두 변호사의 수사적 전략¹⁸⁾

참고문현

- 양태종(1989): “말감 가르기”, 독일학 연구 5, 97-117
 양태종(1993a): “들머리 만들기”, 독일학 연구 9, 101-115
 양태종(1993b): “들머리의 종류와 그 사용 환경”, 언어와 언어교육 8, 59-81
 양태종(1995): “얼거리(narratio)에 대하여”, 언어와 언어교육 10, 53-80
 양태종(1996a): “밝히기(probatio)에 대하여”, 독일학 연구 12, 103-119
 양태종(1996b): “말터(Topos) 나누기”, 언어와 언어교육 11, 83-101
 양태종(1997): “마무리에 대하여”, 독일학 연구 13, 159-176
 양태종(2002): 수사학 이야기. 3판. 부산: 동아대 출판부
 Aristoteles (1980): Rhetorik, übers.v. F.Sieveke. München: Fink

18) 말터의 경우에는 같은 말터가 달리 쓰이는 것만 제시하였다.

- Barthes, Roland (1998): “옛날의 수사학”, 수사학, 김현 역음. 서울: 문학과 지성사, 17-116
- Frank-Böhringer, Brigitte (1963): Rhetorische Kommunikation. Quickborn: Schnelle
- Kopperschmidt, Josef (1976): Allgemeine Rhetorik, 2. Aufl. Stuttgart: Kohlhammer
- Plett, Heinrich F.(1991): Einführung in die rhetorische Textanalyse, 8. Aufl. Hamburg: Buske
- Plett, Heinrich F.(2002):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양태종 옮김. 서울: 동인
- Quintilianus, Marcus Fabius(1988): Ausbildung des Redners, 2 Teile, übers.v. H.Rahn. 2. Aufl. Darmstadt: Wiss. Buchges.
- Wieland, Ch.M.(1989): Geschichte der Abderiten. Stuttgart: Reclam, 215-311

Zusammenfassung

Rhetorische Analyse des literarischen Textes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Inventio -

Yang, Taezong(Dong-A Univ.)

Im Gegensatz zur gegenwärtig üblichen rhetorischen Analyse des literarischen Textes, die hauptsächlich elokutionell ist, wird hier versucht, anhand des Prozesses um des Esels Schatten von Ch. M. Wieland einen Analyseansatz aus den 4 anderen Teilgebieten der Rhetorik zu suchen. Dieser inventionelle Versuch, ist eine Teilaktivität im Rahmen der rhetorischen Analyse und damit selbst ein Desiderat der Forschung. Als Gegenstand der Analyse ist derjenige Text am passendesten, der eine rhetorische Situation darstellt, in der Situations-Interessierte durch parteiliche Rede an den Situationsmächtigen die Änderung der Situation versuchen. Dabei wird die Rede den kanonischen Regeln der Inventio unterworfen und ihre rhetorische Strategie zur Persuasion wird folgendermaßen entwickelt:

Anwalt		des Zahnarztes	des Eseltreibers
Status rationales		Qualität (Das war unrecht.)	Definition (Das war ein Spaß)
Vertretensbarkeit		leicht (ehrenhafte G.)	schwer (bewundernswerte G.)
Rede- teile	Exordium	Gattung Prinzip	Haupteingang Wohlwollen
		Narratio	Klar, Glaubwürdig
		Probatio	Beispiel, Enthymem
		Peroratio	Entrüstung
		Person Zeit, Ort	Sympathie Qual des Zahnarztes
Topos			Nebeneingang Wohlwollen
			Kurz Enthymem
			Entrüstung, Sympathie Qual des Esels

[검색어] 수사학, 수사적 분석, 착상
 Rhetorik, rhetorische Analyse, Inventio